제21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5.12.11.)

조례안 ·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3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4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5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안 -----	12
6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7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안) ----------	17
8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 ----------	23
9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 ----------	26
10	거창군농업회의소 출연(안) ----------	29

의안번호 제2015 - 109호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5. 11. 26.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15. 11. 27.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2. 9.

2. 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도모함에 있어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거창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존속기한(2015.12.31.까지)을 삭제하고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을 위한 조항을 신설함.

3. 주요골자

가. 법령 조항 변경(안 제1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4항을 제16조제8항으로 변경.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용어 순화함(안 제4조)

○ “조언하게 하기” ⇒ “응하기”

다. 위원회 존속기한 조항 삭제(안 제5조)

○ 위원회의 존속기한 2015년 12월 31일을 삭제함.

라. 위원회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6조)

○ 실·과 명칭변경에 따른 “건설교통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 신설: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마. 조례 명칭 변경(안 제18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명칭 변경.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도모함에 있어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거창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존속기한(2015. 12. 31.까지)을 삭제하고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을 위한 조항을 신설함.

❍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의안번호 제2015 - 110호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5. 11. 26.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15. 11. 27.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2. 9.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에 따라 가로수위원회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한시적 명시하였으나, 우리 군의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고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 및 관리하기 위하여 가로수위원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그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성별영향분석 결과 반영(안 제4조제1항)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함.

나. 위원회의 존속기한 조항 삭제(안 제6조)

○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조항 삭제.

다. 가산금 징수와 가산금 산정 조항 삭제(안 제14조제2항)

○ “군수는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9조에 따른 가산금 산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이므로 삭제.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순화함(안 제14조 제3항)

○ “부담금 또는 가산금” ⇒ “부담금”, “때에는 국세 또는” ⇒ “경우에는”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에 따라 가로수위원회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한시적 명시하였으나, 우리 군의 가로수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고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 및 관리하기 위하여 가로수위원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그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의안번호 제2015 - 111호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5. 11. 26.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15. 11. 27.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2. 9.

2.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일부 개정되어(2015. 7. 1.) 맞춤형 복지 급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용어 순화함(안 제2조, 제4조의3, 제4조의4, 제7조, 제8조, 제12조, 제21조, 제25조)

○ “이라 함은” ⇒ “이란”, “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당해” ⇒ “해당”, “각 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각 호에 의한다.” ⇒ “각 호에 따른다.”

나. 문전수거 조항 삭제(안 제2조제12호)

○ 법령상 문전수거 정의가 없으므로 삭제.

다. 쓰레기봉투의 제작 납품 시 환경부가 제시하는 규격을 명시

(안 제16조제4항)

○ 공업진흥청이 1996년도 폐지됨에 따라 승인 조항을 환경부가 제시한 표준규격에 적합함을 명시함.

라. 일반 쓰레기봉투 무료 제공 수수료 감면대상을 구체화함(안 제23조제1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일부 개정되어(2015. 7. 1.) 맞춤형 복지급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의안번호 제2015 - 112호

거창군 도로점용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5. 11. 26.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15. 11. 27.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2. 9.

2. 개정이유

○ 「도로법」이 전부개정(2014.7.15.)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도로법」 등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단순 확인·재기재하여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군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군민의 불편부담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도로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함(안 제1조)

○ 「도로법」 제41조 ⇒ 「도로법」 제66조.

나. 실효성 없는 조문 등을 삭제함(안 제3조·제4조)

○ 징수의 위임, 점용의 허가신청

다. 상위법령을 단순 확인·재기재하는 내용을 변경함(안 제3조~제6조)

○ 점용료 산정기준 및 조정산식: 「도로법 시행령」 별표 3·4 적용

○ 점용료 부과징수 및 반환: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등 적용.

○ 점용료 감면사항: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점용료 감면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도로법」이 전부개정(2014. 7. 15.)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도로법」 등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단순 확인·재기재하여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군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군민의 불편부담을 개선하고자 함.

○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관련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의안번호 제2015 - 113호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5. 11. 26.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15. 11. 27.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2. 9.

2. 폐지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상위법인 「도로법」('14.5.21.시행) 제61조,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 7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이 직접 규정되어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함.

○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이 상위법인 「도로법」(2014. 5. 21. 시행) 제61조,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 7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이 상위법인 「도로법」(2014. 5. 21. 시행) 제61조,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 7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를 폐지함.

○ **거창군도로무단점용지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관련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의안번호 제2015 - 114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5. 11. 26.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15. 11. 27.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2. 9.

2.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조례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함.

3. 주요골자

가.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측정방법 현실화(안 제20조제1항제2호)

나. 성장관리방안 수립 근거 신설(안 제20조의2)

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안 제22조제3호, 안 제24조의2)

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규정 신설(안 제28조)

마.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 증축 시 한시적 건폐율 완화규정 신설(안 제53조제4항)

바.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건폐율 완화규정 신설(안 제56조의2)

사.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건축물 건폐율 완화규정 신설(안 제56조의3)

아.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증축 시 건폐율 완화규정 신설(안 제56조의4)
자. 녹지지역의 등에 있는 한옥 등의 건폐율 완화규정 신설(안 제56조의5)
차.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의 건폐율 완화규정 신설(안 제56조의6)
카. 축사 등 농업용시설 건폐율 상향조정(안 제57조)
타.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규정 신설(안 제61조의3)
파. 임대주택, 기숙사 용적률 완화규정 신설(안 제61조의4)
하. 군계획위원회 심의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규정 신설(안 제65조의2)
거. 군계획상임기획단 구성·운영규정 신설(안 제73조, 안 제74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조례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함.

○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의안번호 제2015 - 118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5. 11. 27.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15. 11. 27.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2. 9.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거창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고도화 사업 및 시험인증분야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2016년도 거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국내 중소 승강기 제조기업의 수출전략화를 위한 종합지원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3. 출연개요

○ 근거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고도화사업 업무 협약서 제3조(2014. 6. 23.)
- 거창승강기R&D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 제3조(2013. 12. 20.)

○ 대 상: 한국산업기술시험원(총괄책임자 강인구 센터장)

○ 총사업비: 11,100백만원(국비 3,900 도비 2,750, 군비 2,850 민자 400 KTL 1,200)

- 2016년도 사업비: 5,050백만원(국비 1,600 도비 1,150 군비 1,100 KTL 1,200)

2016년도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백만원)

사업명	2015년 예산액	2016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군 비	기타 (KTL)
합 계	3,600	2,250	5,050	1,600	1,150	1,100	1,200
구조 및 기술고도화사업	3,500	2,150	3,750	1,600	1,150	1,000	-
시험인증분야 역량강화사업	100	100	1,300	-	-	100	1,200

※ 국비 1,600백만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접 수행함.

○ 사업내용

1. 승강기산업구조 및 기술고도화 사업

- 총수행기간: 2014. 9. 1. ~2017. 8. 31.(36개월)
- 총사업비: 9,800백만원(국비 3,900 도비 2,750 군비 2,750 민간 400)
- 세부사업 내용

가. Pilot 생산지원설비 구축: 승강기 완성품 및 부품의 시험생산 및 시제작품 제작에 필요한 설비 승강기산업 지원 클러스터가 조성된 거창승강기R&D센터에 구축.

나. 중소기업 공동모델 개발: 중소기업 연합체를 통한 100% 순수 국산 수출전략형 승강기 시스템을 개발하며, 국제규격(EN-81)에 부합하는 공동모델 제품 개발.

다.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승강기 제조기업간 자유로운 제품유통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승강기 제품(부품 및 시스템)의 분류체계를 규정하여 승강기 시장활성화 토대 마련.

라. 중소기업 수출지원 마케팅창구 개설·운영: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조사, 수출마케팅, 국내 승강기 제품에 대한 홍보 및 현지기업과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상설 전담기능 구축.

2. 시험인증분야 역량강화 사업

- 사업기간: 2016. 1. 1. ~ 2016. 12. 31.
- 사 업 비: 1,300백만원(군비 100백만원, KTL 1,200백만원)

※ 거창승강기R&D센터 예산 1,300백만원 중 100백만원 군비 지원.

- 세부사업내용

가. 시험인증분야 신규 사업개발: 방화시험분야 KOLAS 획득, 공인시험 지원체계 구축, 방화시험설비(문세트시험장치) 보강 구축.

나. 시험인증분야 역량강화: 내환경 시험장비 부대시설 구축, 장비 Upgrade 교정 및 유지관리.

4. 부서의견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 고도화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고도화사업 협약서에 따라 출연금을 편성하였고

○ 시험인증분야 역량강화 사업은 거창승강기R&D센터의 자립화를 위해 재정지원으로 거창승강기 R&D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따라 거창승강기R&D센터 예산 1,300백만원 중 100백만원의 군비를 편성하였으므로

○ 2016년에 예산 편성한 출연금 2,250백만원은 타당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Ⅰ. 승강기산업구조 및 기술고도화 사업 그 간의 추진실적

가. Pilot 생산지원설비 구축

- 3차원 측정기 구입: 474,500천원(운영인력 2명 확보)

- 장비구축 공간 확보: 330㎡(거창승강기R&D센터 생산지원동)
- 2차년도 장비구축 수요조사.
- 공동모델 제품 개발 사양 적정성 검토: 전문가 회의를 통한 기술사양 검토 지원.

나. 중소기업 공동모델 개발

- 공동모델 개발위한 신규 참여기관 선정: 2개 기관(수도권 1, 경남권 1)
  · 수도권: 중기특화형 엘리베이터 개발.
  ⇒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금호엘리베이터 외 5개 기업
  · 경남권: 신형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 개발.
  ⇒ 승강기밸리기업협의회: 한국승강기대학교외 5개 기업.

다.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 운영 체계 개발.
  · 시스템 구성 범위 검토.
  · 분류체계 및 정보수집 방법 검토.
  · 사업비 산정 적정성 검토.
-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용역 조달 발주 및 사업자 선정.
- 운영 프레임워크 설계 및 DB 구축.

라. 중소기업 수출지원 마케팅창구 개설

- 전담인력 확보: 해외 무역중계 경력자1명(사무공간 66㎡확보)
- 승강기 전용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 구축.
  · 사업자 선정 및 마케팅 플랫폼 구축 완료.
- 외국 현지업체 업무 네트워크 구축: 동남아 시장 개척 시장 조사 용역.

마. 기타

- 승강기관련 핵심 전략제품 발굴 및 정부과제 사업화 지원과제 수행.

· 경남도 승강기산업 육성 연구회 사업 선정: 100백만원.
· 수출전략형 고속승강기급 핵심안전장치부품 기술개발: 1,341백만원.
- 기술지원 및 상담: 20건(해외인증 5, 마케팅지원 7, 시험평가지원 8)
- 기업지원 홍보 활동: 리플릿 및 판촉물 제작 등 배포(2,000여 명)

Ⅱ. 협약서 등 관련자료 검토결과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안)은 경상남도, 거창군, 한국기술시험원과 함께 승강기 구조 및 기술고도화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서상에 군비10억원을 지원하도록 협약된 사항이고,

○ 거창승강기 R&D 센터 운영을 위해 경상남도, 거창군, 한국기술시험원, (재)경남테크노파크과 업무협약서를 검토 결과 거창군은 기업유치, 행정지원 인력파견 등 행·재정 지원 및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협약된 사항으로서 방화시험인증분야 역량강화사업를 위한 1억원의 재정을 지원하는 사항임.

○ 금번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안)은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 되었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해당없음

8.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의안번호 제2015 - 119호

거창군 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5. 11. 27.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15. 11. 27.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2. 9.

2. 제안이유

○ 거창화강석 신기술지원사업을 통하여 석산·석재가공 기업의 애로 사항 해결 및 거창화강석의 고부가가치화와 제품 인지도 증대.

3. 출연개요

○ 근거법령: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6조 및 제9조

○ 대 상: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이사장 장민철)

○ 사 업 비: 24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2016년도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백만원)

사업기간	2015년 예산액	2016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2016년	120	240	240	120	36	84	-

○ 사업내용

- 석분슬러지 광물화 연구
- 석재를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 석제표면처리기술 응용 및 활성화

4. 부서의견

○ 석재산업의 애로사항인 석분슬러지의 처리와 석재표면 처리 기술 응용 및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신기술 지원사업이 필요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석분슬러지 광물연구사업은 석분 슬러지를 이용하여 유리 제조업 및 세라믹산업 등에 사용되는 산업광물로의 원료 개발사업비 80백만원(국비 40 도비 12 군비 28)으로 사업추진.

○ 석재를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개발 사업은 석재를 활용한 벽화, 패널, QR 코드 등을 지자체 문화관광사업과 연계하여 문화관광콘텐츠개발사업으로서 사업비 80백만원(국비 40 도비 12 군비 28)으로 사업추진.

○ 석재표면처리기술 응용 및 활성화사업은 칼라석재 등 기 개발된 석재표면처리 응용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석제품 및 판매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사업비 80백만원(국비 40 도비 12 군비 28)으로 사업추진.

○ 금번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은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해당없음

8.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의안번호 제2015 - 120호

거창 화강석연구센터 출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5. 11. 27.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15. 11. 27.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2. 9.

2. 제안이유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거창 화강석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

3. 출연개요

○ 근거법령: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 대 상: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이사장 장민철)

○ 사 업 비: 20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2016년도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백만원)

사업기간	2015년 예산액	2016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6년	200	200	200	-	-	200	-

○ 사업내용: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인건비 등)

4. 부서의견

○ 거창화강석 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수행 중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는 센터장 1명, 연구원 2명, 생산직원 2명, 총 5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음.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200백만원의 출연금(인건비)을 출연해 왔음.

❍ 2015년도 세출예산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연구직 3명 인건비 130,882천원, 기술직 2명 52,270천원, 연구직 및 기술직 연구활동비 9,500천원으로 총 192,652천원이 지급 되었으며

❍ 금번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은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 되었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해당없음

8.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의안번호 제2015 - 121호

거창군 농업회의소 출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5. 11. 27.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15. 11. 27.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2. 9.

2. 제안이유

○ 거창농업발전과 농정 파트너로서 거창군과 거창농업인을 대표하는 협의기구인 거창군농업회의소의 업무수행 역량강화를 위해 부족한 재정을 지원하고자 함.

3. 출연개요

○ 근거법령: 「거창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3조

○ 대 상: 거창군농업회의소(대표 김제열)

○ 사 업 비: 54백만원(출연 예정금액)

2016년도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백만원)

사업기간	2015년 예산액	2016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6년	54	54	54	-	-	54	-

○ 사업내용: 종사자 인건비, 소식지 발행, 농업정보 수집, 농업농촌

발전 심포지엄 개최 등 회의소 주관사업 운영비 지원

4. 부서의견

○ 농업계의 보편·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업인의 지위 향상 및 위상제고를 위하여 농업회의소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사)거창군 농업회의소에 2012년 40백만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보조금으로 54백만을 지급해 왔으나, 2015년도 54백만원의 출연금을 출연해 왔음.

❍ 2014년도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보조사업 내용으로는 농업회의소 홍보 및 회원 관리, 회원교육사업운영, 위탁조사연구 위탁, 농업심포지엄 사업 등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 정산서를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 27,015,665원 중 12,460,000원, 정책실장 인건비 21,848,735원, 사무장 11,965,585원 중 2,151,265원이 보조금으로 36,460,000원, 시설비 46,193,400원, 총액 82,663,4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 내용에 부적합하게 정산처리하고 있음.

❍ 향후 출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교부 결정 사업내용에 적합하게 사용·집행하였는지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거창농업회의소 출연(안)은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 되었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해당없음

8.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